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3193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0.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10. 19. 접수 제127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2가소56390)를 제기하여, 원고와 C 사이에 2023. 6. 13. 'C은 원고에게 2023. 7. 31.까지 11,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202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2020. 10. 14. C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23.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0.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8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기재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시가 278,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은 536,679,523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7,700,000원+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1,800,000원+F카드채무 2,179,523원+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60,000,000원+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무 11,000,000원+피고에 대한 채무 284,000,000원)에 달하므로,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C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E은행에 대하여 41,800,000원의 채무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11,224,219원의 채무{=11,000,000원+224,219원(=11,000,000원×12%×62일(2023. 8. 1.부터 2023. 10. 1.)/365일, 원 미만 버림)}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이 된다[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F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24. 1. 3. C의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6,987,500원의 사전구상금채무가 발생한 사실, 2024. 2. 13. F카드에 대한 2,179,523원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이 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3. 10. 1.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D,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C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은 합계 53,024,219원(=41,800,000원+11,224,219원)인 반면, C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78,000,000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별지